## 1. 방송사업자 분담금 산정 체계

#### 1-1. 최종 징수율 산정

#### ----- < 기본 징수율 > -

광고매출액 구간별 최소 기본징수율값 **+** (1.0, 2.0, 3.0, 4.0, 5.0) 사업자별 광고매출액 -광고매출액 구간 시작값 광고매출액 구간 상한값 - 시작값

x <sup>조정계수</sup> (0.9234)

※ 해당 연도 기본징수율이 전년도 기본징수율의 150%을 초과하는 경우, 150%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해당 연도의 기본징수율로 함

#### X

#### < 징수율 추가 감경 >

KBS⋅EBS(공공성): 1/3 감경
지역⋅중소지상파: 1/3 감경
※ 당기순손실 발생 시: 1/2 감경

· 종편·보도채널 : 14.23% 감경

◦ 중앙지상파 및 종편·보도채널 : 총 자본의 10%를 초과하는 당기순손실

발생 시 1/2 추가 감경



### 최종 징수율 결정

### 1-2. 분담금 징수금액 결정

<del>─</del>─ < 분담금 산출 > -

방송광고 매출액 × 최종 징수율

#### - < 면제 및 경감 > -

구분	관련규정	내용
면 제	시행령 제13조 제1항제1호	광고매출액 50억원 이하이며, 당기순손실 발생 사업자
	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호	재무상태표 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사업자
경 감	시행령 제13조 제1항제3호	재무상태표 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: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분담금 경감



사업자별 최종 징수금액 결정

# 2. 방송사업자별 분담금 산정 내역 등의 공개

(단위 : %, 원)

No	방송사업자명	구분	기본징수율	징수율 감경 구분	최종징수율	분담금 감면액	분담금 감면 사유	분담금 결정액
1	㈜문화방송	중앙지상파	3.8288%	_	3.8288%	_	_	8,875,762,320
2	㈜에스비에스	중앙지상파	3.9128%	_	3.9128%	_	_	12,272,413,020
3	한국방송공사	중앙지상파	3.8522%	방통위 고시 2019-10호 제5조	2.5681%	_	-	6,536,788,340
4	한국교육방송공사	중앙지상파	2.2136%	제1호에 따른 1/3 감경	1.4758%	_	-	382,075,550
5	㈜케이엔엔	지역민방	2.0675%		1.3784%	_	-	269,628,270
6	㈜티비씨방송	지역민방	1.9517%		1.3012%	_	-	189,261,360
7	㈜광주방송	지역민방	1.9031%		1.2688%	_	-	157,835,900
8	㈜대전방송	지역민방	1.8568%		1.2378%	_	-	129,127,240
9	㈜전주방송	지역민방	1.2129%		0.8086%	_	-	53,105,630
10	㈜청주방송	지역민방	1.2298%		0.8199%	_	-	54,598,050
11	㈜G1	지역민방	1.6915%		1.1277%	_	-	103,281,360
12	㈜경인방송	라디오	0.2435%		0.1623%	_	-	2,140,270
13	㈜경기방송	라디오	0.3464%		0.2309%	_	-	4,331,330
14	(재)불교방송	라디오	0.8306%	방통위 고시 2019-10호 제5조 제2호에 따른 1/3 감경	0.5537%	_	-	24,902,960
15	(재)극동방송	라디오	0.3106%		0.2071%	_	-	3,482,550
16	서울특별시교통방송	라디오	0.0811%		0.0540%	_	-	237,270
17	(재)부산영어방송재단	라디오	0.0185%		0.0123%	_	_	12,360
18	한국방송공사	DMB	0.0572%		0.0381%	_	_	118,070
19	오비에스경인티브이㈜	지역민방	2.0023%		1.3349%	207,184,541		16,215,140
20	(재)기독교방송	라디오	2.1374%		1.4249%	55,511,465		266,365,590
21	(재)광주영어방송재단	라디오	0.0161%		0.0107%	6,417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	2,940
22	㈜와이티엔디엠비	DMB	0.2031%		0.1354%	982,401	- 제13조 제1항 제3호에 - 따른 경감	506,940
23	한국디엠비㈜	DMB	0.0365%		0.0243%	41,282		6,740
24	유원미디어㈜	DMB	0.0968%		0.0646%	305,956		32,600
25	부산문화방송㈜	지역MBC	1.8963%	방통위 고시 2019-10호 제5조 제2호에 따른 1/2 감경	0.9482%	_	-	115,155,990
26	대구문화방송㈜	지역MBC	1.8059%		0.9030%	_	-	88,295,890
27	광주문화방송㈜	지역MBC	1.6121%		0.8060%	_	-	70,360,570
28	대전문화방송㈜	지역MBC	1.6034%		0.8017%	_	-	69,603,910

No	방송사업자명	구분	기본징수율	징수율 감경 구분	최종징수율	분담금 감면액	분담금 감면 사유	분담금 결정액
29	전주문화방송㈜	지역MBC	1.2320%		0.6160%	_	_	41,094,180
30	㈜엠비씨경남	지역MBC	1.8869%		0.9435%	_	-	110,745,910
31	㈜엠비씨충북	지역MBC	1.8523%		0.9262%	_	-	94,838,800
32	제주문화방송㈜	지역MBC	1.0899%		0.5450%	_	_	32,163,100
33	울산문화방송㈜	지역MBC	1.1881%		0.5940%	_	_	38,214,910
34	포항문화방송㈜	지역MBC	0.9827%		0.4914%	_	_	26,147,520
35	㈜엠비씨강원영동	지역MBC	1.5984%		0.7992%	_	_	69,168,240
36	㈜울산방송	지역민방	1.2045%		0.6023%	_	_	39,281,040
37	㈜제주방송	지역민방	1.1996%		0.5998%	_	_	38,959,380
38	춘천문화방송㈜	지역MBC	0.8919%		0.4459%	21,534,876		0
39	목포문화방송㈜	지역MBC	0.8992%		0.4496%	21,889,181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-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제	0
40	여수문화방송㈜	지역MBC	0.8034%		0.4017%	17,475,159		0
41	안동문화방송㈜	지역MBC	0.8510%		0.4255%	19,604,765		0
42	원주문화방송㈜	지역MBC	0.8008%		0.4004%	17,360,588		0
43	㈜와이티엔라디오	라디오	0.2559%		0.1279%	1,772,720		0
44	(재)평화방송	라디오	0.6750%		0.3375%	12,512,637		0
45	(재)원음방송	라디오	0.4345%		0.2173%	5,111,690		0
46	㈜와이티엔	보도전문	2.8658%		2.4580%	_	_	1,356,292,150
47	㈜채널에이	종합편성	2.9591%	방통위 고시 2019-10호 제5조 - 제3호에 따른 14.23% 감경 -	2.5380%	532,043,545	ᅥᆸᄉᇀᅬᆸᅜ겁ᆸᅠᅿᆌᆋᅡ	996,492,840
48	㈜매일방송	종합편성	3.1318%		2.6861%	204,016,615		1,664,949,120
49	㈜조선방송	종합편성	3.1804%		2.7278%	237,549,003		1,732,223,070
50	㈜연합뉴스티브이	보도전문	2.4344%		2.0880%	361,458,687		378,790,050
51	㈜제이티비씨	종합편성	3.3750%	방통위 고시 2019-10호 제5조 제3호에 따른 14.23% 감경 및 제5조 제4호에 따른 1/2 추가 감경	1.2072%	2,163,439,505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감	217,507,730

<sup>※</sup> 기본징수율 및 최종징수율은 소수점 네자리로 표기

## 3. 근거법령

## □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(분담금의 면제·경감, 분할 납부 및 가산금)

-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·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13.10.30., 2015.6.22.>
- 1. 다음 각 목의 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가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
  - 나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
- 2.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(자본잉여금을 포함 한다. 이하 제3호에서 같다) 총액 이상인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
- 3.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
- 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1억원을 말한다. <신설 2020. 8. 4.>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을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, 제2회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. <신설 2020. 8. 4.>
- ④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20. 8. 4.> [제목개정 2020. 8. 4.]
- □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-10호) 제8조(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)

위원회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기본징수율, 징수율 감경사유, 최종징수율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하거나 경감한 내역 및 분담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